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u>축산환경복지과</u>	팀 장 이상혁	044-201-2381
		사무관 김상돈	044-201-2375
		주무관 한명관	044-201-2376

I. 사업개요

1. 목 적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p)
합 계	140,814	153,368	134,436	206,406	154,170	179,602
국 고	46,629	45,417	42,708	49,760	43,150	47,900
용 자	38,645	51,521	44,968	70,030	65,822	70,958
지방비	44,770	45,660	38,990	56,234	33,591	40,202
자부담	10,770	10,770	7,770	30,382	11,607	20,542

II.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사업 대상자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 계열화 사업 주체, 농업기술센터
-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정착촌분뇨처리 : 한센인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방자치단체

- 액비저장조 : 전문유통주체, 축산농가, 농업경영체(단, 농업경영체는 액비유통센터 주체와 3년이상 액비납품 계약서가 체결된 경우)
 - * 전문유통주체 :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 농경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가 지정한 재(농업법인, 지역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 전문유통주체(액비유통센터)
- 액비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기,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주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 적용사항 》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별표10]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도 동일 적용)
 -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등(이하 [별표10] 적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 농어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등은 제외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양돈농가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함(한우, 젓소, 닭 농가는 ‘18년부터 적용)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별지 제21호서식],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 ①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자
- ②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 ③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자
- ④ 지원대상 농가 등은 처리시설 설치와 함께 악취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
 -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악취저감용 미생물 생산·공급 시설의 경우 동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곳(자원화조직체*, 농업기술센터)
 - * 자원화조직체 :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조직
- ⑥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기계·장비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의 관리 계획(장비·시설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ICT활용축산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지침은 별도 시달

⑦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자(2020년부터 적용)○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가축분뇨(100%)를 활용하여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또는 퇴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 기존 퇴·액비화 시설에 에너지화시설을 추가로 설치 하고자 할 경우,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에너지 생산 이용 및 퇴·액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 에너지화시설의 경우,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또는 국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의무 참여(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부계획수립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의무 반영)
 - ※ 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 참여 시·군간에 협의를 거쳐 설치 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 시·군에서 시·도에 신청
 - ※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은 가축분뇨 신속수거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 중 준설관련 장비의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장비지원 대상은 농식품부가 지원한 공동자원화사업장)

*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 세부지침은 별도 시달

○ 정작촌분뇨처리 : 한센인 정착촌 내에서 한센인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법인체 등

- 한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및 분뇨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액비저장조

- 전문유통주체로서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비료생산업등록 또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농가로서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생산된 액비를 저장, 품질유지, 유통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 (이 경우 전문유통주체는 액비저장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 농업경영체(일반 경종농가 또는 법인)로서 액비유통센터 주체와 3년이상 액비납품 계약서를 체결할 것
 - * 액비저장조 설치시 악취저감(지붕, 바이오필터, 커튼 등) 및 액비품질(폭기 시설)등 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반드시 갖추어 것

○ 액비유통센터

- ①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 이상 권장)
- ② 액비유통센터와 경종 및 축산농가간 액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
- ③ ‘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Agrix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조직 (신규 센터는 반드시 동 시스템에 의해 관리 되어야 함)
- ④ 비료생산업 등록 권장(2018년까지)
- ⑤ 사업주관기관은 액비유통센터에서 정부지원 또는 액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유통센터명, 전화번호, 소유주,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성분표시 등) 부착 할 것

○ 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하고, 비료생산업 등록 또는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과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전문유통주체
 - * 액비살포비 지원 세부지침은 별도 시달

○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판정기 : 액비성분 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자원화 조직체로서 요건을 갖추고 이행 할 것

- ① 부숙판정,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 ② 유지 보수가 가능한 예산을 확보할 것
- ③ 전담자 지정, 농촌진흥청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년 1회) 이수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것

3. 사업별 지원내용 및 자금 용도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 퇴·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등
-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정화시설(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 수질기준('19년)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정화개보수(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19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등
- 에너지화시설: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에너지 자원을 생산,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
- 부대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장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큇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킵로더, 축분퇴비포장기,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 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축산농가 지원 제외 시설·장비 : 바큇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킵로더(단, 전업농 이상 지원가능)*, 축분퇴비포장기, 공동퇴비장,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스킵로더 구입기준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스킵로더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 전업농기준 : 한우·육우·젖소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 30,000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 악취저감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생산, 공급하는 시설
- 가축분뇨처리 시설 첨단화 및 네트워크(분뇨발생량 및 이동관리 체계 등) 구축에 소요되는 시설 설치·기계·장비 등
-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개별시설 설치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구입
- 광역축산악취개선 : 축산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신규설치 또는 개보수)
- 악취측정용 ICT 기계·장비 등(악취감지센서, 기상장비 등)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퇴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과 남은 소화액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개보수 : 퇴·액비 시설·기계·장비, 악취방지시설, 전력계량기, 혐기소화조 및 가스포집장치, 열병합발전기 등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필요한 등록, 모니터링 및 유량계 설치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포함

※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 : 가축분뇨 고착슬러지 제거 및 신속수거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 정착촌분뇨처리 : 한센인 정착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해당하는 시설 설치, 기계, 장비 등

○ 액비저장조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개보수비 등

- 고정식 액비저장조(200톤 이상 등) 여러 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1단계 → 2단계 → 3단계 등)하도록 권장
-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다만, 지방비를 시·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주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센터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센터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예 :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20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 액비저장조 개보수 : 지붕 및 외관파손, 누수, 바닥균열에 따른 보수, 교반·폭기 시설 추가 및 교체(단, 액비저장조내 슬러지 제거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 위탁처리비용 등 처리비용을 제외한 순수하게 슬러지를 제거하는 비용만 개보수 사업비에 포함)

* 개보수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 액비유통센터 : 바큇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 구입비 지원

○ 액비살포비 :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단,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대상 필지는 지원불가. 지자체는 액비살포비 지원시 조사료 필지는 제외하고 지급)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액비부속도판정기 : 액비부속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구입비용 지원

4.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용자	자부담	용자조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20	20	6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만기상환) 3%
악취측정 ICT기계 장비	40	30		30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퇴비화 - 에너지화	40 50	30 20	30 20	- 10	
정착촌분뇨처리	50	30	20	-	
액비저장조	20	50		30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액비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속도판정기	50	50	-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50	50	-	-	
축산환경개선	100				
자연순환농업활성화			70	30	연 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하되, 시·도비는 10~50% 이내 편성하고 지방비를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지방비의 50% 이내에서 대체 가능
-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경우 국비용자를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우선지원 가능

5.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산정기준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정착촌분뇨처리는 다음 축종별 축사 m²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 무허가축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하겠다는 조건부로 지원 가능
 -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단위 : 천원/m²)

축 종	폐 지	한 · 육우	젖 소	닭	
				평 사	케이 지
단 가	148	60	70	42	68

-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 제외)
 - 단, ‘개’는 「건축법」에 의한 신고된 축사면적이 없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면적 기준
- ② 소·말 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염소)·개는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 메추리는 닭 기준으로 각각 지원
-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m²단위면적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 ⑤ 2009.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창고형 건물은 제외)
- ⑥ 한센인 정착촌내 공동시설의 경우 사업비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도가 확인한 정착촌내 축산 농가중 시설운용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실제 이용 농가의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 ⑦ 무창돈사(또는 무창계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하여 사업비 단가의 40%를 가산하여 적용가능하고 닭 케이지의 단가는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
- ⑧ 가축분뇨의 전처리시설·장비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축사 m²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준) 초과시 축사 m² 단위면적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⑨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①~⑧을 준용하되, 사업참여농가(법인체 등 포함)의 사업비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컨설팅 후 재 산정하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의 개별농가 한도액을 적용

○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다만 공동자원화시설은 톤당 기준)

(단위 : 백만원/개소,톤)

구 분	대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 <u>깨끗한 축산</u> 개별 농가	500	300		200	
· <u>농장 조성</u> 법인체 등	2,000	800		1,000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40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액비화 50%이상 생산)		
- 퇴비화			40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		
- 에너지화			9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 정착촌분뇨처리			<u>깨끗한 축산농장 조성</u> 에 준함		
· 액비저장조	신규	20(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개보수	9(200톤 규모기준, 슬러지 제거비용 포함)			
· 액비유통센터		200(최초 지원시)			
· 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 액비성분분석기		37			
· 액비부숙도판정기		30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1.2			

- ※ ① 사업비에 환경영향평가비, 설계비·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단, 환경영향평가비, 설계비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
-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 ③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 가능물량(퇴·액비화, 퇴비화, 에너지화 70톤 이상)을 제시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생물배양실, 검사실, 액비성분분석기·부속도판정기, 교육장 및 조경 등 부대시설 설치 가능(악취방지 및 소독시설 의무설치)
- 퇴·액비화 시설은 액비화 50%이상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액비(원수 포함)를 4개월(생산 1개월, 저장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5% 이내에서 구입(단, 자원화 시설 2개소 설치시 여건에 따라 운반·살포장비 구입하고, 공동자원화시설에 액비유통센터 신규 지원 제외)
 - 공동자원화시설처리 규모는 최대 300톤이내
- ④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폭기·교반 시설, 적산전력계 포함) 1기당 지원 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 등 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
- * 액비저장조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 ⑤ 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 4대강유역 수계의 수변구역지정 관련 지역의 개별시설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 ⑥ 액비유통센터는 기 지원 전문유통주체(공동자원화시설)에 이중지원을 금지하고, 액비살포 실적 등을 자원화조직체 평가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⑦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경우 축종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비 한도액을 별도 적용 할 수 있음
- ⑧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비는 고착슬러지 제거 장비(진공흡입준설차, 고액분리기, 발전기 등)와 신속수거 장비(운반차량, 포크레인 등)를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심사평가단계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3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200백만원 이내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는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분뇨처리 관련 사업추진 방향, 사업물량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2월말)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에 위임 가능)
 - 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에 대한 사업 주관기관은 시·도지사(설치지역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시·도 지사가 지정)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 실시(1월초)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시·군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희망자를 취합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군은 가축분뇨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퇴·액비 이용촉진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당해 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청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퇴비화, 에너지화)을 추진코자 하는 해당 시·군은 사업계획 수립시 환경부서와 반드시 협의 하고 관내 기존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적정 처리 규모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첨부하고, 신청자격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에 제출(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 시·군간 협의 내용 첨부). 시·도는 자체 검토 및 평가 후 유형별(퇴·액비화, 퇴비화, 에너지화) 1개소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해당 시·도는 시·군의 의견을 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동자원화사업장의 분뇨처리 여유용량, 지방비 반영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사업신청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시·군에 신청
 - ※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부지를 확보할 것(사업신청자 소유 부지)
 - ※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참여시군의 의견, 2개 이상 시군 협의결과, 시·군간 분뇨 반입, 반출 협약 체결, 사업 추진 일정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대상지역(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 ① 악취민원이 심각하고 사업참여 농가가 많은 지역
- ②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신축수거사업, ICT활용축산악취관리지원사업 지역
- ③ 지역 주민의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 지역(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자본금은 기본요건을 충족하되 많이 확보하고 있는자)
- ④ 사업 예정부지가 기존 공동처리시설(공동자원화, 공공처리장) 부지 내 또는 인근 지역(예 : 500m이내)
- ⑤ 가축사육 밀집지역, 중규모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 액비살포가 용이한 대단위 농경지가 확보된 지역
- ⑥ 4대강 유역, 5대 지류하천(미호천, 갑천, 경안천, 광주천, 금호강) 유역 및 새만금 등 간척지 유역 등
- ⑦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사업 신청시 우선 선정

○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에너지) : 시·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선정 (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선정방식 : 전문가들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서류심사, 현장확인, 발표 및 질의응답)를 통해 최종 확정

- 선정기준 : (퇴·액비화, 퇴비화)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민원해결 등), 지자체장의 관심도(사업추진 기본계획, 퇴·액비 이용촉진 계획 및 유통협의체 구성 실적 등) 등

(에너지화) 가축분뇨·농축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자원화조직을 선정

* 평가항목 : 기본계획, 사업장 입지, 원료조달, 운영·관리계획, 퇴액비화 및 에너지 이용계획, 공법의 적정성, 환경부서와 협의자료, 시·군간 협의자료, 시·군간 분뇨 반입, 반출 협약 체결 등

⇒ 공동자원화사업자, 가축분뇨 신축수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 절차, 평가 및 선정 방법·기준 등은 별도세부지침으로 운영

○ 시·도별 예산배정

-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검토·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시·도에 통보

시·도(시·군)

- 시·도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법인체 등)·정착촌분뇨처리·액비유통센터·액비 성분 분석기·액비부속도판정기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축산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감안,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군별 예산배정 계획을 12월말까지 시·군에 통보
 - ※ 시·도는 시·군별 예산 배정시 관내 전년 예산 집행실적, 도축장 운영, 조사료 재배면적(퇴액비 활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할 수 있음.
- 시·군·구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개별농가)·액비저장조·액비살포비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축산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신청
 - 시·도의 예산배정 계획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익년도 1.15일까지 확정·통보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 ①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 시·도(시·군)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농가, 환경친화 축산농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농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 친환경 경축산인증농가, HACCP 인증농가, 동물복지인증농가, 축산물브랜드 참여농가·생산자 단체가 추진하는 “깨끗한 농장 가꾸기” 운동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및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분뇨처리시설
- ②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내 농가에 우선 지원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대강 유역과 새만금 지역 등)
- ③ 액비저장조 : 1순위*(전문유통주체), 2순위(전문유통주체와 저장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농가), 3순위(액비살포 농경지를 확보하고 액비살포 능력이 있는 농가)
 - *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 액비유통센터에 선정된 경우 우선 지원
- ④ 액비살포비 : 1순위*(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등록 유통주체), 2순위(조사료 생산과 연계된 유통주체), 3순위(공동자원화시설 등의 유통주체) 등 조직체에 우선 지원

3. 세부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세부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사업지침 별도 수립 통보)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5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도(시·군)의 농축산식품심의회(가축분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의 공개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축산과학원·농협중앙회·축산환경관리원·민간전문컨설팅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설계(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포함)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함).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ICT활용축산악취관리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후 사업 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조를 통해 사업타당성, 사업시행상 문제점, 컨설팅 등을 반영하여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공동자원화시설은 축산환경컨설팅을 세부사업 단계별(세부계획-설계전-설계후-준공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농식품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퇴액비, 에너지)사업」에 따라 복수의 실증 실적을 보유한 사업주체 또는 공법사는 컨설팅 생략 가능
- 시·군은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토결과와 세부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환경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한 자료 및 시·군간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 ① 사업비 적정성 : 지자체의 평균 건설단가, 기계·장비 실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처리용량(내벽) 및 시설규모(액비화 120일이상, 유효용량 85% 이하(여유율 15% 이상))
- ② 시설설치 기준 : 내진 설계 및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 ③ 반입원료 :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가축분뇨의 반입비율을 미리 설정하고, 액비·정화의 경우 축산농가에서 1차 고액분리 된 가축분뇨를 수거
- ④ 참여대상농가 : 기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의 개별시설에서 우선 처리하고 잉여물량을 처리코자 하는 농가 위주로 우선 참여토록 하고, 3,0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반입실태를 감안하여 후순위로 참여
- ⑤ 저장시설 확보 : 퇴비·액비 제조후 지역내 유통량(살포면적)을 감안한 저장시설 확보 등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 ⑥ 사업대상자는 참여농가, 시설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거료, 농경지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 ⑦ 악취저감시설, 소독시설, 안전시설(표지판, 난간 등) 등 의무 설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을 확정된 후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함께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 등을 통지할 때 대출취급기관에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과 융자한도액을 함께 통지
-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비 지원 금액 범위내의 사업계획(부지 등) 변경은 시장·군수가, 사업비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검토 후 변경 승인
 - 사업주관기관이 시·도인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시·군에 위임된 경우 시장·군수가 변경 승인)
 - * 단, 공동자원화시설의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시·도지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타당성 검토 후 변경승인(시설 설치비·부지·자원화율·참여농가 변경 등)
 - 시·도(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 승인내용을 직상위 기관에 보고

사업대상자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선정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사업계획을 축산환경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공동자원화시설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다만, 2개 이상 시·군일 경우 시·군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법인체 등)·정착촌환경개선지원·액비유통센터·액비 성분분석기·액비부속도판정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개별농가)·액비저장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통보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 제출
 -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포기자 및 총사업비의 30%(융자담 포함) 이상 불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2년간 지원 제외
 - * 최근 3년내 공동자원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후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 포기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2년간 사업참여 제한.

4. 사업시행

시·도(시·군), 감리기관

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절한 시설·장비를 구입·설치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발간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고시된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3천만원(사업비) 이상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약칭 : 가축분뇨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단 1억원(사업비) 이상의 사업인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필요성 및 시설용량, 처리방법, 설치 장소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견을 받아 계약 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단 2회 유찰시 기존지원 방식을 적용
 - 다만, 3천만원(사업비) 미만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및 액비저장조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자원화시설 공사계약시 시운전기간을 공사계약기간에 포함하고 준공조건(퇴·액비 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명시하며, 준공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시 보완공사기간 및 비용부담 등 계약당사자간에 부담해야 할 조치사항을 포함하도록 조치
 - 공법사로 선정된 경우 최소 1년이상 위탁 운영·관리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시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사업대상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소액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 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 착공 · 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공사감리계약 체결. 단, 에너지화시설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기술 진흥법)와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시)
 - 사업주관기관은 “설계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 관계 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한센인 정착촌은 한국농촌공사 또는 한빛복지협회에 위탁하여 감리 실시(준공 검사시 각각 확인)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i)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 한 후 ii)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하고, 그 다음 iii)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완료 검사·정산 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사업대상자(사업주체)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분뇨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없이 실시

나. 시공업체 계약체결

-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대상자는 공법사에게 토목·건축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일괄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법사가 토목·건축 등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괄발주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분리발주 가능
 - 공법업체에게 일괄발주 하는 경우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시 공법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완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이를 준용)
 -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에 대한 사업대상자와 공법업체, 시공업체간 명확한 책임·관리에 대한 계약사항 포함해야 함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설 계>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이 경우 “가축분뇨 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08.10)를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실한 시공 추진(단, 3천만원 미만의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첨부하는 서류로 같음)
- 사업대상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촌공사 또는 설계 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입회하에 사업대상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착공·시공>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공사감리>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5.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 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는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 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 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실시
 - 사업비 검정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급금 등을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 승인 조치(승인 방법 3.세부계획수립,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참고)

- 공동자원화사업은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 지급이 가능(신용보증서 첨부)
- 사업주관기관은 시험가동 후 공법사가 제시한 물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조치사항 미 이행 공법사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용자를 자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정산전에 대체된 자부담을 용자로 조치하여야 함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용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사업검정 및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용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시공·납품업체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납품업체의 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 또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운영자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과 용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용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용자금을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 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의2제9항에 따라 증빙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사업주관기관은 9.30일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및 자금배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축산환경관리원 합동 현지 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사·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지도
- 공동자원화시설
 - 시·도는 반기(5·11월)별 자체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17년말까지 인·허가 미획득 또는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시·도(시·군)는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 경영장부를 기재
 - 시·군 및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준공 후 매년 운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군은 사업자가 참여농가 중 계약위반 농가에 패널티 부과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초 계약물량을 이행하지 않는 참여농가에 대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비 등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액비가 비료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비료공정규격 적합 여부를 연 2회 이상 분석·의뢰하고, 그 결과를 비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	사업완료(준공)후 5년	○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등
○가 축 분 뇨 처 리 시 설 (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액비저장조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0년		
○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5년		

○ 보 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2019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선정 결과보고	2018.3.31한	시·군(시·도) → 시·도 (농식품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사항 * 서식은 별도 통보
○ 2019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 - 회계연도 정산 보고	2019.1.05한 2019.3.05한		
○ 2017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2018.3.15한		
○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보고(연)	2018.12.31한		

《제 제》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와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휴·폐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재개 및 자금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자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 위반,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다만, 가축분뇨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별표9) 중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개별기준 폐항)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개별기준 고항)에는 1회시 경고, 2회시 1년간, 3회 이상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
- 덜 부숙된 가축분뇨 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2회이상 위반시 정책자금 2년간 지원 제외
 - 부숙도 판정기준은 시·군에 보급된 액비부숙도 측정 결과에 준함.

7. 성과측정단계

- 가축분뇨 자원화율(%)
 - 축종별 분뇨발생량(가축통계), 공공처리물량(환경부), 액비사용량 및 부산물 비료 판매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원화율 측정
 - 측정시기 : 2월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우수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평가 실시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

- 평가대상 : 공동자원화시설
- 평가기간 : 2018년 1월 ~ 12월
- 평가내용 : 가동률 등 계획대비 처리실태,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실태, 퇴·액비 생산·유통관리 등
- 평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위원 등 전문가로 평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 우수 액비유통센터 >

- 평가대상 : 정부지원 액비유통센터
- 평가기간 : 2018년 1월 ~ 12월
- 평가내용 : 사업장 운영실태, 시비처방서 발급실적, 액비살포 실적, 시설·장비 등 활용실태, 위탁받은 액비저장조 관리실태, 액비품질관리 실태 등
- 평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위원 등 전문가로 평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환 류》

-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핵심주체인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조직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자금 지원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로 선정(상위 30%)된 사업주체는 다음연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사업(운영자금, 연 2%) 대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 우수 액비유통센터 선정한 후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고,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유통센터를 등급화* 하여 액비살포비 차등 지원

* 등급화 : A등급 : 30만원/ha, B등급 : 20만원/ha, C등급 : 10만원/ha

** "C"등급 연속 3회 이상 또는 합계 5회 이상을 받은 경우 차년도 1년간 지원 제외

*** 운영실태 점검, 시료채취 등 거부시 당해 사업 및 차년도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C"등급으로 하고, 당해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비료생산업 등록(가축분뇨 발효액)시 시점은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원(등급별로 50천원/ha)
- 최근 3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에 대하여 1회(최초)에 한하여 정책자금 2년간 제한 규정 유예(부속도 평가는 제외)
- 최근 1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에 관리부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등 기회 부여(예산 등 자체 부담)

IV.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에서는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19년도의 사업 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18.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201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8. 4월)

2. 기타 사항(예고)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자에 한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자금 지원(2020년부터 적용)
- 공동자원화시설('17년) 및 액비유통센터('18년)는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 의무화
 - *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신규·공사중인 사업자는 준공 및 비료생산업 등록 후 사업비 정산, 운영 중인 시설이 비료생산업 미등록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참여 제한
-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사업신청자는 '18년부터 본인 소유의 사업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19년부터는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여야만 사업신청 가능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및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대상은 '19년부터 축산 환경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신청서류에 포함시켜야만 지원가능 ('18년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 대규모(200톤 이상) 액비저장조사업은 '19년부터 신규지원을 중단하고 기존 시설 개보수 위주로 지원 전환(연구용역을 통해 개보수 지원단가 재산정)
- 밀폐공간 작업시 질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8년부터 휴대용 유해 가스측정기 보급 지원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깨끗한 축산농장 조성)는 사업완료 후 1년 이내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에서 열거한 환경친화축산농장, HACCP인증농가 등으로 지정 또는 인증을 받도록 지도·권고(2020년부터 의무화 계획)
- 무허가 개선대책 관련 2018.3.25일 이후 무허가축사에 대하여 사업지원 제한
- 정착촌분뇨처리지원사업은 '19년부터 깨끗한축산농장조성사업으로 지원

구분	현행	변경	사유
1. 사업 개요	2.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u>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경영체법”이라 한다)</u>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2.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u>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u>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 법률명 지구수정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II. 2018년 사업 시행 주요내용	II. 2017년 사업 시행 주요내용 1. 지원사업 대상자 ○ 개별처리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u>농업경영체법</u>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착산계열화 사업 주체, 농업기술센터	II. 2018년 사업 시행 주요내용 1. 지원사업 대상자 ○ <u>깨끗한 축산농장 조성</u>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u>농어업경영체법</u>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착산계열화 사업 주체, 농업기술센터	○ 개별처리시설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으로 명칭통일(이하 동일) ○ 법률명 지구수정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행주요내용	○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생산자 단체, <u>농업경영체법</u>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상법상 법인) ○ (생략) ○ (생략) ○ (생략)	○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생산자 단체, <u>농어업경영체법</u>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상법상 법인)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법률명 지구수정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 법률명 지구수정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 <u>액비성분분석기, 부속도판정기</u>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주체	○ <u>액비성분분석기, 부속도판정기,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u>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주체	○ 밀폐공간 작업시 질식사고 예방 등을 위해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보급

구분	현행	변경	사유
2. 지원자격 및 요건	《공통 적용사항》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업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13조에 따라 [별표10]의 농업법인 지원 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도 동일 적용) -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동이하 [별표10] 적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등은 제외 ○ 퇴·역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영농농가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 하여야함(한우, 젓소, 닭 농가는 '18년부터 적용) ○ 가족농노법 제17조 제3항 및 제43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족농노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가족농노 정보처리시설 관리일제별지 제21호서식, 가족농노 및 퇴·역비화 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	《공통 적용사항》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업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13조에 따라 [별표10]의 농업법인 지원 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도 동일 적용) -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동이하 [별표10] 적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등은 제외 ○ 퇴·역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영농농가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 하여야함(한우, 젓소, 닭 농가는 '18년부터 적용) ○ 가족농노법 제17조 제3항 및 제43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족농노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가족농노 정보처리시설 관리일제별지 제21호서식, 가족농노 및 퇴·역비화 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	○ 농업법인 지원 조건 및 사후관리 기준 적용을 기존 한국농어촌공사 및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생산자단체에도 적용 ○ 법률명 자구조정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 기존 개별처리시설 사업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 생산자단체가 공통 적용사항에 누락되어 있어 이번에 포함

구분	현행	변경	사유
	○ 개별처리시설 ①~⑤ (생략) ⑥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기계·장비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의 관리 계획(장비·시설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신설> (7) <신설>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또는 퇴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기존 퇴·액비화 시설에 에너지화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퇴·액비화(가축)시설 운영자로서 규모화를 통한 운영 개선 및 기존처리물량당초 사업계획 기준의 50% 이상을 추가하여 처리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에너지 생산 이용 및 퇴·액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국외 :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무 참여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기계·장비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의 관리 계획(장비·시설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ICT활용축산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지침은 별도 시달 (7)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자(2020년부터 적용)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가축분뇨(100%)를 활용하여 1일 70톤 이상 퇴·액비화 또는 퇴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기존 퇴·액비화 시설에 에너지화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에너지 생산 이용 및 퇴·액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에너지화시설의 경우,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또는 국외 :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의무 참여(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부계획수립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의무 반영)	○ ICT활용축산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 지침 운용 ○ 100대 국정과제 수행 및 악취저감, 사양관리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자격 요건에 추가 ○ 공동자원화사업의 사업주관기관 일원화 및 자구수정 ○ 퇴·액비화, 퇴비화 처리원료를 가축분뇨로 구체화 ○ 집행을 제고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처리물량 추가사항 삭제 ○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자격 대상을 에너지화시설로 구체화 하고 국내 또는 국외 중 선택 참여 명확화 및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모니터링 시스템 (축경) 구축 의무화(담당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구분	현행	변경	사유
	※ <신설> ※ <신설> * <신설>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성분분석기 및 부속도판정기 : 액비성분 분석 및 부속도 측정,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자원화 조직체로서 요건을 갖추고 이행 할 것 ①~② (생략) ③ 전담자 지정,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보수 교육(년 1회)이수 ○ <신설>	※ 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 참여 시·군간에 협의를 거쳐 설치지역을 선정할 후 해당 시·군에서 시·도에 신청 ※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은 가축분뇨 신속수거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 중 종설관련 장비의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장비 지원 대상은 농식품부가 지원한 공동자원화사업장) *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 세부지침은 별도 시달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성분분석기 및 부속도판정기 : 액비성분 분석 및 부속도 측정,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자원화 조직체로서 요건을 갖추고 이행 할 것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담자 지정, 농촌진흥청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년 1회)이수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것	○ 사업참여 시·군이 광역화의 경우 시·군간 협의결과를 반영하고 시·군에서 시·도에 신청하도록 명시 ○ 신규사업(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의 지원자격 및 요건 명시 ○ 성분분석기 및 부속도판정기 교육기관 추가(농촌진흥청)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보급 지원자격 및 요건 추가
	3. 사업별 지위내용 및 자금 용도 ○ 개별처리시설 - (생략) * (생략) - (생략) - 정화개보수(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19년	3. 사업별 지위내용 및 자금 용도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정화개보수(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19년	

구분	현행	변경	사유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 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악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방류유량계, 전력량계 의무설치) 등 - (이하 생략)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 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악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등 - (현행과 같음)	○ 차구수정
	○ 공동자원화시설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신설>	○ 공동자원화시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가축분뇨 신속순거 사업 : 가축분뇨 고착슬러지 제거 및 신속순거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 신규사업(가축분뇨 신속순거사업)의 자금용도 명시
	○ (생략) ○ 액비저장조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 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개보수비 등 - (생략) - (생략) - (생략) - 액비저장조 개보수 : 지붕 및 외관파손, 누수, 바닥균열에 따른 보수, 교반·폭기 시설 추가 및 교체(단, 액비저장조내 슬러지 제거조건으로 지원 하며, 슬러지 제거비용은 처리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슬러지를 제거하는 비용은 개보수 사업비에 포함) * (생략)	○ (현행과 같음) ○ 액비저장조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 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개보수비 등 - (생략) - (생략) - (생략) - 액비저장조 개보수 : 지붕 및 외관파손, 누수, 바닥균열에 따른 보수, 교반·폭기 시설 추가 및 교체(단, 액비저장조내 슬러지 제거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 위탁처리비용 등 처리비용을 제외한 순수하게 슬러지를 제거하는 비용만 개보수 사업비에 포함) * (현행과 같음)	○ 액비저장조 개보수 슬러지 제거 비용 지원내용 구체화(슬러지 처리비용은 제외)

구분	현행	변경	사유																																																																																																																																															
	○ (생략) ○ 액비살포비 :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속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u>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u>	○ (현행과 같음) ○ 액비살포비 :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속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u>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단,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대상 필지는 지원불가, 지자체는 액비 살포비 지원시 조사료 필지는 제외하고 지급)</u>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중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대상 필지를 제외하여 중복지원 방지																																																																																																																																															
	○ (생략) ○ (생략) ○ <신설>	○ (현행과 같음)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구입비용 지원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보급 자금용도 추가																																																																																																																																															
4.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의무량																																																																																																																																																		
<table><tr><th>내역사업명</th><th>국비보조</th><th>지방비</th><th>국비융자</th><th>자부담</th><th>융자조건</th></tr><tr><td rowspan="2">개별처리시설 - 악취측정 ICT기계정비</td><td>20</td><td>20</td><td>60</td><td>-</td><td rowspan="5">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단, 2% 등 3%)</td></tr><tr><td>40</td><td>30</td><td>30</td><td>30</td></tr><tr><td>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퇴비화 - 에너지화</td><td>40</td><td>30</td><td>30</td><td>20</td></tr><tr><td>정착준구조개선</td><td>50</td><td>30</td><td>20</td><td>-</td></tr><tr><td>액비저장조</td><td>20</td><td>50</td><td>-</td><td>30</td></tr><tr><td>액비유통센터</td><td>30</td><td>50</td><td>-</td><td>20</td></tr><tr><td>액비살포비</td><td>50</td><td>50</td><td>-</td><td>-</td><td></td></tr><tr><td>액비성분분석기</td><td>50</td><td>50</td><td>-</td><td>-</td><td></td></tr><tr><td>액비부속도판정기</td><td>50</td><td>50</td><td>-</td><td>-</td><td></td></tr><tr><td><신설></td><td></td><td></td><td></td><td></td><td></td></tr><tr><td>축산환경개선</td><td>100</td><td></td><td></td><td></td><td></td></tr><tr><td>자연순환농업활성화</td><td></td><td>70</td><td></td><td>30</td><td>연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td></tr></table> * (생략) * (생략) * <신설>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개별처리시설 - 악취측정 ICT기계정비	20	20	6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단, 2% 등 3%)	40	30	30	30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퇴비화 - 에너지화	40	30	30	20	정착준구조개선	50	30	20	-	액비저장조	20	50	-	30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액비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속도판정기	50	50	-	-		<신설>						축산환경개선	100					자연순환농업활성화		70		30	연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table><tr><th>내역사업명</th><th>국비보조</th><th>지방비</th><th>국비융자</th><th>자부담</th><th>융자조건</th></tr><tr><td rowspan="2">계분화 축산농장 조성 - 악취측정 ICT기계정비</td><td>20</td><td>20</td><td>60</td><td>-</td><td rowspan="5">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단, 2% 등 3%)</td></tr><tr><td>40</td><td>30</td><td>30</td><td>30</td></tr><tr><td>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퇴비화 - 에너지화</td><td>40</td><td>30</td><td>30</td><td>20</td></tr><tr><td>정착준구조개선</td><td>50</td><td>30</td><td>20</td><td>-</td></tr><tr><td>액비저장조</td><td>20</td><td>50</td><td>-</td><td>30</td></tr><tr><td>액비유통센터</td><td>30</td><td>50</td><td>-</td><td>20</td></tr><tr><td>액비살포비</td><td>50</td><td>50</td><td>-</td><td>-</td><td></td></tr><tr><td>액비성분분석기</td><td>50</td><td>50</td><td>-</td><td>-</td><td></td></tr><tr><td>액비부속도판정기</td><td>50</td><td>50</td><td>-</td><td>-</td><td></td></tr><tr><td>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td><td>50</td><td>50</td><td>-</td><td>-</td><td></td></tr><tr><td>축산환경개선</td><td>100</td><td></td><td></td><td></td><td></td></tr><tr><td>자연순환농업활성화</td><td></td><td>70</td><td></td><td>30</td><td>연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td></tr></table>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우선지원 가함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계분화 축산농장 조성 - 악취측정 ICT기계정비	20	20	6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단, 2% 등 3%)	40	30	30	30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퇴비화 - 에너지화	40	30	30	20	정착준구조개선	50	30	20	-	액비저장조	20	50	-	30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액비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속도판정기	50	50	-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50	50	-	-		축산환경개선	100					자연순환농업활성화		70		30	연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보급 사업 지원조건 추가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개별처리시설 - 악취측정 ICT기계정비	20	20	6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단, 2% 등 3%)																																																																																																																																													
	40	30	30	30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퇴비화 - 에너지화	40	30	30	20																																																																																																																																														
정착준구조개선	50	30	20	-																																																																																																																																														
액비저장조	20	50	-	30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액비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속도판정기	50	50	-	-																																																																																																																																														
<신설>																																																																																																																																																		
축산환경개선	100																																																																																																																																																	
자연순환농업활성화		70		30	연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계분화 축산농장 조성 - 악취측정 ICT기계정비	20	20	6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단, 2% 등 3%)																																																																																																																																													
	40	30	30	30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퇴비화 - 에너지화	40	30	30	20																																																																																																																																														
정착준구조개선	50	30	20	-																																																																																																																																														
액비저장조	20	50	-	30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액비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속도판정기	50	50	-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50	50	-	-																																																																																																																																														
축산환경개선	100																																																																																																																																																	
자연순환농업활성화		70		30	연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의 사업자금 우선지원 내용 명시																																																																																																																																																		

구분	현행	변경	사유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산정기준 - (생략) * (생략) ※ ①~⑧ (생략) ⑨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①~⑧을 준용하되, 한도액 설정은 컨설팅 후 계 산결 ○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다만 공동지원화 시설은 톤당 기준) (단위 : 백만원/개소,톤)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산정기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①~⑧ (현행과 같음) ⑨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①~⑧을 준용하되, 사업참여농가(법인체 등 포함)의 사업비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컨설팅 후 계 산정하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의 개별농가 한도액을 적용 ○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다만 공동지원화 시설은 톤당 기준) (단위 : 백만원/개소,톤)	○ 광역축산악취개선 사업비 지원 한도액 구제화(5억원 이내)																																																																																																																																																																																																											
	<table><tr><th>구분</th><th>분</th><th>대 지</th><th>한 우</th><th>짓 소</th><th>평사</th><th>케이 지</th></tr><tr><td rowspan="2">· 개별 개 별 농 가</td><td rowspan="2">500</td><td rowspan="2">300</td><td rowspan="2"></td><td rowspan="2">200</td><td rowspan="2"></td><td rowspan="2"></td></tr><tr><td>· 축 산 농</td><td>2,000</td><td>800</td><td></td><td>1,000</td></tr><tr><td colspan="7">· 공동지원화시설</td></tr><tr><td>- 퇴·예비화</td><td></td><td>(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예비화 50%이상 생산)</td><td>40</td><td></td><td></td><td></td></tr><tr><td>- 퇴비화</td><td></td><td>(1일 70톤 이상 처리)</td><td>40</td><td></td><td></td><td></td></tr><tr><td>- 에너지화</td><td></td><td>(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td><td>90</td><td></td><td></td><td></td></tr><tr><td>· 정 착 준 분 뇨 처리</td><td>신규</td><td>개별시설에 준함</td><td></td><td></td><td></td><td></td></tr><tr><td rowspan="2">· 예비 저장조</td><td>개보수</td><td>200(200톤 규모기준, 복기·교반 시설 포함)</td><td></td><td></td><td></td><td></td></tr><tr><td></td><td>90(200톤 규모기준, 슬러지 제거비용 비포함)</td><td></td><td></td><td></td><td></td></tr><tr><td>· 예비유동센터</td><td></td><td>200(최초 지원시)</td><td></td><td></td><td></td><td></td></tr><tr><td>· 예비살포비</td><td>[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동보)]</td><td>200(최원/ha)</td><td></td><td></td><td></td><td></td></tr><tr><td>· 예비성분분석기</td><td></td><td>21</td><td></td><td></td><td></td><td></td></tr><tr><td>· 예비무속도관정기</td><td></td><td>30</td><td></td><td></td><td></td><td></td></tr><tr><td>· <신설></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구분	분	대 지	한 우	짓 소	평사	케이 지	· 개별 개 별 농 가	500	300		200			· 축 산 농	2,000	800		1,000	· 공동지원화시설							- 퇴·예비화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예비화 50%이상 생산)	40				- 퇴비화		(1일 70톤 이상 처리)	40				- 에너지화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90				· 정 착 준 분 뇨 처리	신규	개별시설에 준함					· 예비 저장조	개보수	200(200톤 규모기준, 복기·교반 시설 포함)						90(200톤 규모기준, 슬러지 제거비용 비포함)					· 예비유동센터		200(최초 지원시)					· 예비살포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동보)]	200(최원/ha)					· 예비성분분석기		21					· 예비무속도관정기		30					· <신설>							<table><tr><th>구분</th><th>분</th><th>대 지</th><th>한 우</th><th>짓 소</th><th>평사</th><th>케이 지</th></tr><tr><td rowspan="2">· 개별 개 별 농 가</td><td rowspan="2">500</td><td rowspan="2">300</td><td rowspan="2"></td><td rowspan="2">200</td><td rowspan="2"></td><td rowspan="2"></td></tr><tr><td>· 축 산 농</td><td>2,000</td><td>800</td><td></td><td>1,000</td></tr><tr><td colspan="7">· 공동지원화시설</td></tr><tr><td>- 퇴·예비화</td><td></td><td>(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예비화 50%이상 생산)</td><td>40</td><td></td><td></td><td></td></tr><tr><td>- 퇴비화</td><td></td><td>(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td><td>40</td><td></td><td></td><td></td></tr><tr><td>- 에너지화</td><td></td><td>(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td><td>90</td><td></td><td></td><td></td></tr><tr><td>· 정 착 준 분 뇨 처리</td><td>신규</td><td>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준함</td><td></td><td></td><td></td><td></td></tr><tr><td rowspan="2">· 예비 저장조</td><td>개보수</td><td>200(200톤 규모기준, 복기·교반 시설 포함)</td><td></td><td></td><td></td><td></td></tr><tr><td></td><td>90(200톤 규모기준, 슬러지 제거비용 비포함)</td><td></td><td></td><td></td><td></td></tr><tr><td>· 예비유동센터</td><td></td><td>200(최초 지원시)</td><td></td><td></td><td></td><td></td></tr><tr><td>· 예비살포비</td><td>[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동보)]</td><td>200(최원/ha)</td><td></td><td></td><td></td><td></td></tr><tr><td>· 예비성분분석기</td><td></td><td>37</td><td></td><td></td><td></td><td></td></tr><tr><td>· 예비무속도관정기</td><td></td><td>30</td><td></td><td></td><td></td><td></td></tr><tr><td>·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td><td></td><td>12</td><td></td><td></td><td></td><td></td></tr></table>	구분	분	대 지	한 우	짓 소	평사	케이 지	· 개별 개 별 농 가	500	300		200			· 축 산 농	2,000	800		1,000	· 공동지원화시설							- 퇴·예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예비화 50%이상 생산)	40				- 퇴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	40				- 에너지화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90				· 정 착 준 분 뇨 처리	신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준함					· 예비 저장조	개보수	200(200톤 규모기준, 복기·교반 시설 포함)						90(200톤 규모기준, 슬러지 제거비용 비포함)					· 예비유동센터		200(최초 지원시)					· 예비살포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동보)]	200(최원/ha)					· 예비성분분석기		37					· 예비무속도관정기		30					·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12				
구분	분	대 지	한 우	짓 소	평사	케이 지																																																																																																																																																																																																								
· 개별 개 별 농 가	500	300		200																																																																																																																																																																																																										
							· 축 산 농	2,000	800		1,000																																																																																																																																																																																																			
· 공동지원화시설																																																																																																																																																																																																														
- 퇴·예비화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예비화 50%이상 생산)	40																																																																																																																																																																																																											
- 퇴비화		(1일 70톤 이상 처리)	40																																																																																																																																																																																																											
- 에너지화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90																																																																																																																																																																																																											
· 정 착 준 분 뇨 처리	신규	개별시설에 준함																																																																																																																																																																																																												
· 예비 저장조	개보수	200(200톤 규모기준, 복기·교반 시설 포함)																																																																																																																																																																																																												
		90(200톤 규모기준, 슬러지 제거비용 비포함)																																																																																																																																																																																																												
· 예비유동센터		200(최초 지원시)																																																																																																																																																																																																												
· 예비살포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동보)]	200(최원/ha)																																																																																																																																																																																																												
· 예비성분분석기		21																																																																																																																																																																																																												
· 예비무속도관정기		30																																																																																																																																																																																																												
· <신설>																																																																																																																																																																																																														
구분	분	대 지	한 우	짓 소	평사	케이 지																																																																																																																																																																																																								
· 개별 개 별 농 가	500	300		200																																																																																																																																																																																																										
							· 축 산 농	2,000	800		1,000																																																																																																																																																																																																			
· 공동지원화시설																																																																																																																																																																																																														
- 퇴·예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예비화 50%이상 생산)	40																																																																																																																																																																																																											
- 퇴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	40																																																																																																																																																																																																											
- 에너지화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90																																																																																																																																																																																																											
· 정 착 준 분 뇨 처리	신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준함																																																																																																																																																																																																												
· 예비 저장조	개보수	200(200톤 규모기준, 복기·교반 시설 포함)																																																																																																																																																																																																												
		90(200톤 규모기준, 슬러지 제거비용 비포함)																																																																																																																																																																																																												
· 예비유동센터		200(최초 지원시)																																																																																																																																																																																																												
· 예비살포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동보)]	200(최원/ha)																																																																																																																																																																																																												
· 예비성분분석기		37																																																																																																																																																																																																												
· 예비무속도관정기		30																																																																																																																																																																																																												
·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12																																																																																																																																																																																																												

구분	현행	변경	사유
	※ ①~② (생략) ③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 가능물량 (퇴·액비화 70톤 이상, 에너지화 70톤 이상)을 제시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생물배양실, 검사실, 액비성분분석기·부속도판정기, 교육장 및 조경 등 부대시설 - (생략) - (생략) - <신설> ④~⑦ (생략) ⑧ <신설>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이하 생략)	※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 가능물량 (퇴·액비화, 퇴비화, 에너지화 70톤 이상)을 제시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생물배양실, 검사실, 액비성분분석기·부속도판정기, 교육장 및 조경 등 부대시설 설치 가능(약취방지 및 소독시설 의무설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공동자원화시설처리 규모는 최대 300톤 이내 ④~⑦ (현행과 같음) ⑧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에 필요한 기계 장비는 고착 슬러지 제거 장비(진공흡입준설차, 고액분리기, 발진기 등)와 신속수거 장비(운반차량, 포크레인 등)를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심사평가단계에 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현행과 같음)	○ 처리유형이 확대(퇴비화 추가) 됨에 따라 명시 ○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서 처리 규모 설정 ○ 신규사업(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의 지원 한도액 명시
III. 포 스포스 (SP)에 따른 담당 역할	I.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에 위임 가능) - (생략)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 신청 공고 실시(1월초) - (생략) ○ 시·군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희망자를 취합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I.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에 위임 가능) - (현행과 같음)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 신청 공고 실시(1월초) - (현행과 같음) ○ 시·군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희망자를 취합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구분	현행	변경	사유
	- (생략)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에너지화)을 추진코자 하는 해당 시·도(시·군)는 사업계획 수립시 환경부서와 반드시 협의하고 관내 기존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적정처리 규모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첨부하고, 신청자격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 ※ <신설> 사업신청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시·군에 신청 ※ <신설> ※ (생략)	- (현행과 같음)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퇴비화, 에너지화)을 추진코자 하는 해당 시·군은 사업계획 수립시 환경부서와 반드시 협의하고 관내 기존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적정처리 규모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첨부하고, 신청자격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에 제출(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 시·군간 협의 내용 첨부) 시·도는 자체 검토 및 평가 후 유형별(퇴·액비화, 퇴비화, 에너지화) 1개소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해당 시·도는 시·군의 의견을 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동자원화 사업장의 분뇨처리 여유용량, 지방비 반영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사업신청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시·군에 신청 ※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부지를 확보할 것(사업신청자 소유 부지) ※ (현행과 같음)	○ 공동자원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신청시 시·군은 사업계획서 종합적 검토 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 자체 평가 후 유형별 1개소 농식품부에 신청 - 광역화(2개 이상의 시·군)의 경우 사업계획수립시 시·군의 의견, 협의결과, 사업추진일정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명시 ○ 신규사업(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의 지원기준 및 범위 명시 ○ 공동자원화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부지 확보 의무화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대상지역 우선 선정기준 구체화 (약취민원 심각성 및 해결노력, 사업참여 의지 등 명시)

구분	현행	변경	사유
	※ 대상지역(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① 광역축산업체개선폭진사업지역 ②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 지역(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자본금은 기본 요건을 충족하되 많이 확보하고 있는지) ③ 사업 예정부지가 기존 공동처리시설(공동자원화, 공공처리장) 부지 내 또는 인근지역(예 : 500m이내) ④ 가축사육 밀집지역, 중규모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 액비살포가 용이한 대단위 농경지가 확보된 지역 ⑤ 4대강 유역, 5대 지류하천(미호천, 갑천, 경안천, 광주천, 금호강) 유역 및 새만금 등 간척지 유역 등 ⑥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사업 신청시 우선 선정 ○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에너지) : 시·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선정(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선정방식 : 전문가들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류·현장·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 - 선정기준 : (퇴·액비화)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부지확보, 민원해결 등), 지자체장의 관심도(사업추진 기본계획, 퇴·액비 이용 촉진계획 및 유통협의체 구성 실적 등) 등 (에너지화) 가축분뇨·농축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자원화조직을 선정 * (현행과 같음)	※ 대상지역(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① 의뢰민원이 심각하고 사업참여 농가가 많은 지역 ② 광역축산업체개선폭진사업, 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ICT활용축산 악취저감사업 지역 ③ 지역 주민의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 지역(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자본금은 공통 적용사항을 충족하되 많이 확보하고 있는지) ④ 사업 예정부지가 기존 공동처리시설(공동자원화, 공공처리장) 부지 내 또는 인근지역(예 : 500m이내) ⑤ 가축사육 밀집지역, 중규모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 액비살포가 용이한 대단위 농경지가 확보된 지역 ⑥ 4대강 유역, 5대 지류하천(미호천, 갑천, 경안천, 광주천, 금호강) 유역 및 새만금 등 간척지 유역 등 ⑦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사업 신청시 우선 선정 ○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에너지) : 시·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선정(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선정방식 : 전문가들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서류심사, 현장확인, 발표 및 질의응답)를 통해 최종 확정 - 선정기준 : (퇴·액비화, 퇴비화)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민원해결 등), 지자체장의 관심도(사업추진 기본계획, 퇴·액비 이용 촉진계획 및 유통협의체 구성 실적 등) 등 (에너지화) 가축분뇨·농축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자원화조직을 선정 * (현행과 같음)	○ 사업부지 확보 의무화에 따라 우선 선정기준에서 삭제 ○ 신규사업(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등 사업자 선정 평가관련 별도 세부지침 운영 명시

구분	현행	변경	사유
	⇒ 공동자원화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 절차, 방법, 평가기준 등을 별도세부지침으로 운영 ○ 시·도별 예산배정 - (현행과 같음) 시·도(시·군) ○ 시·도 : 개별처리시설(법인체 등)·경작촌분노처리·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 분석기·액비부속도판정기 - (생략) - (생략) ※ (생략) ○ 시·군·구 : 개별처리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액비살포비 - (생략) - (생략)	⇒ 공동자원화사업자, 가족분노 신속수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 절차, 평가 및 선정 방법·기준 등을 별도세부지침으로 운영 ○ 시·도별 예산배정 - (현행과 같음) 시·도(시·군) ○ 시·도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법인체 등)·경작촌 분노처리·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 분석기·액비부속도판정기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시·군·구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개별농가)·액비저장조·액비살포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자구수정

구분	현행	변경	사유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 개별처리시설 : 시·도(시·군)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농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농가,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친환경축산인증농가, HACCP 인증농가, 동물복지인증농가, 축산물브랜드 참여농가·생산자 단체가 추진하는 “깨끗한 농장 가꾸기” 운동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및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분뇨처리시설 ·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내 농가에 우선 지원(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대강 유역과 세만금 지역 등) · 액비저장조 : 1순위(전문유통주체), 2순위(전문유통주체와 저장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농가), 3순위(액비/실포 농경지를 확보하고 액비실포 능력이 있는 농가) ·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 액비유통센터에 선정된 경우 우선 지원 · 액비실포비 : 1순위(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등록 조직체), 2순위(조사로 생산과 연계된 공동자원화시설), 3순위(공동자원화시설) 등 조직체에 우선 지원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①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 시·도(시·군)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농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농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 친환경축산인증농가, HACCP 인증농가, 동물복지인증농가, 축산물브랜드 참여농가·생산자 단체가 추진하는 “깨끗한 농장 가꾸기” 운동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및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분뇨처리시설 ②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내 농가에 우선 지원(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대강 유역과 세만금 지역 등) ③ 액비저장조 : 1순위(전문유통주체), 2순위(전문유통주체와 저장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농가), 3순위(액비/실포 농경지를 확보하고 액비실포 능력이 있는 농가) ·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 액비유통센터에 선정된 경우 우선 지원 ④ 액비실포비 : 1순위(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등록 유통주체), 2순위(조사로 생산과 연계된 유통주체), 3순위(공동자원화시설 등의 유통주체) 등 조직체에 우선 지원	○ 액비실포비 지원지침에 따라 우선 선정기준 순위별 대상을 유통주체로 통일
	3. 세부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세부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사업지침 별도 수립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세부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 조치(사업지침 별도 수립 통보)	○ 신규사업(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의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명시

구분	현행	변경	사유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5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도(시·군)의 농축산식품심의회(가축분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의 공개 심의를 거쳐 사업 계획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축산과학원·농협중앙회·축산환경관리원·민간전문컨설팅기관 등 <u>관련분야 전문기관</u>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 - <u>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u>의 경우 사업자 선정 후 사업 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조를 통해 사업타당성, 사업시행상 문제점, 컨설팅 등을 반영하여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현행과 같음) - 시·군은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토결과와 세부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을 <u>대상</u>으로 하는 경우 환경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한 자료 및 시·군간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5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도(시·군)의 농축산식품심의회(가축분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의 공개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축산과학원·농협중앙회·축산환경관리원·민간전문컨설팅기관 등 <u>관련분야 전문기관</u>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 설계(제원조달 및 사육에 관한 사항 포함)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함). - <u>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u> 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ICT활용축산악취관리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후 사업 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조를 통해 사업타당성, 사업시행상 문제점, 컨설팅 등을 반영하여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현행과 같음) - 시·군은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토결과와 세부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을 <u>대상</u>으로 하는 경우 환경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한 자료 및 시·군간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세부계획 확정 전 실시계획 검토 등을 축산환경관리원에 의뢰하여 기술검토 및 의견수렴 의무화 ○ 신규사업(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ICT활용축산악취관리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명시 ○ 자구수정

구분	현행	변경	사유
	<u><공동자원화시설(퇴비·액비화) 설치시 유의사항></u> · 사업비 적정성 : 지자체의 평균 건설단가, 기계·장비 실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처리용량(내벽) 및 시설규모(액비화 120일 이상, 유효용량 85% 이하) · 시설설치 기준 : 내진 설계 및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 반입원료 :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가축분뇨의 반입 비율을 미리 설정하고, 액비·정화의 경우 축산농가에서 1차 고액분리 된 가축분뇨를 수거 · 참여대상농가 : 기존 개별처리시설에서 우선 처리하고 잉여 물량을 처리코자 하는 농가 위주로 우선 참여토록 하고, 3,0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반입실태를 감안하여 후순위로 참여 · 저장시설 확보 : 퇴비·액비 제조후 지역내 유통량(살포면적)을 감안한 저장시설 확보 등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 사업대상자는 참여농가, 시설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거로, 농경지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신설>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을 확정 한 후 사업대상 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생략) - (생략) - (생략) ○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생략) · (생략) · (생략)	<u><공동자원화시설 설치시 유의사항></u> ① 사업비 적정성 : 지자체의 평균 건설단가, 기계·장비 실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처리용량(내벽) 및 시설규모(액비화 120일 이상, 유효용량 85% 이하(여유율 15% 이상)) ② 시설설치 기준 : 내진 설계 및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③ 반입원료 :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가축분뇨의 반입 비율을 미리 설정하고, 액비·정화의 경우 축산농가에서 1차 고액분리 된 가축분뇨를 수거 ④ 참여대상농가 : 기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의 개별시설에서 우선 처리하고 잉여물량을 처리코자 하는 농가 위주로 우선 참여토록 하고, 3,0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반입실태를 감안하여 후순위로 참여 ⑤ 저장시설 확보 : 퇴비·액비 제조후 지역내 유통량(살포면적)을 감안한 저장시설 확보 등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⑥ 사업대상자는 참여농가, 시설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거로, 농경지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⑦ 악취저감시설, 소독시설, 안전시설(포지판, 낙강 등) 등 의무 설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을 확정 한 후 사업대상 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공동자원화시설 전체로 확대 ○ 명확화를 위해 여유공간 명시 ○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시 환경 오염 방지 및 안전시설 의무 설치사항 추가

구분	현행	변경	사유
	* 단, 공동자원화시설의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시·도 지사가 타당성 검토 후 변경승인(시설 설치비·부지·자원화율·참여농가 변경 등) - (생략) 사업대상자 ○ 광역축산의뢰개선사업, 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 (이하 생략) 4. 사업시행 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이하 생략)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3천만원(사업비) 이상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법령(가축분뇨법 제34조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 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 단, 공동자원화시설의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시·도 지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타당성 검토 후 변경승인(시설 설치비·부지·자원화율·참여농가 변경 등) - (현행과 같음) 사업대상자 ○ 광역축산의뢰개선사업, 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 (현행과 같음) 4. 사업시행 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현행과 같음)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3천만원(사업비) 이상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법령(약칭 : 가축분뇨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을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단 1억원(사업비) 이상의 사업인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필요성 및 시설용량, 처리방법, 설치 장소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견을 받아 계약 체결	○ 공동자원화시설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담당 기관 명시 ○ 신규사업(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추가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부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단 2회 유찰시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부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단 2회 유찰시	○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의무화(부설시공 예방 및 공정성 확보) ○ 관련법령 구체적 명시

구분	현행	변경	사유
	기존지원 방식을 적용 - 다만, 개별시설 및 예비적장조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기존지원 방식을 적용 - 다만, 3천만원(사업비) 미만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및 예비적장조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자체감리 대상 사업비를 3천만원 미만으로 구체화
	○ (이하 생략)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착공·시공> ○ (생략) <공사감리>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공사감리계약 체결) - (이하 생략)	○ (현행과 같음)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착공·시공> ○ (현행과 같음) <공사감리>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공사감리계약 체결. 단, 에너지화시설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기술 진흥법)와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시) - (현행과 같음)	○ 사업규모가 큰 에너지화시설의 경우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의무화
5. 자금배정단계		5.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이하 생략)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생략)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현행과 같음)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현행과 같음)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구분	현행	변경	사유
	실시 - (현행과 같음) - 공동자원화사업은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총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 지급이 가능(신용보증서 첨부)하며, 사업주체가 지방비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는 총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 지급 가능 - (현행과 같음)	실시 - (현행과 같음) - 공동자원화사업은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총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 지급이 가능(신용보증서 첨부) - (현행과 같음)	○ 공동자원화사업 지방비를 사업주체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의 계약금 지급 조건 삭제(현재 지방비의 50%이내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 (이하 중략) ○ 사업주관기관은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 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 규정 제53조제6항에 따라 증명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생략)	○ (현행과 같음) ○ 사업주관기관은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 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 규정 제53조의2제9항에 따라 증명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현행과 같음)	○ 관련 조항 변경에 따른 수정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관역축산악취개선사업 : 축산환경관리원 포함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 내역 등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축산환경관리원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 내역 등	○ 농식품부 추진사업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점검기관 추가 (축산환경관리원 역할 강화)

구분	현행	변경	사유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이하 생략) ○ 보고 <table> <tr> <th>보 고 사 항</th><th>보고기한</th><th>보고기관</th><th>비 고</th></tr> <tr> <td>○ 2018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보고</td><td>2017.3.31한</td><td rowspan="4">시·군(시·도) → 시·도</td><td rowspan="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td></tr> <tr> <td>○ 2018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td><td>2018.1.05한</td></tr> <tr> <td>- 회계연도 정산 보고</td><td>2018.3.05한</td></tr> <tr> <td>○ 2016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완료 · 정산보고</td><td>2017.3.15한</td></tr> <tr> <td>○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보고(연)</td><td>2017.12.31한</td><td>(농식품 부)</td><td>* 서식은 별도 통보</td></tr> </table> 《제 제》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생략) ○ (생략)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 위반,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신설>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2018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2017.3.31한	시·군(시·도) → 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	○ 2018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	2018.1.05한	- 회계연도 정산 보고	2018.3.05한	○ 2016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완료 · 정산보고	2017.3.15한	○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보고(연)	2017.12.31한	(농식품 부)	* 서식은 별도 통보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현행과 같음) ○ 보고 <table> <tr> <th>보 고 사 항</th><th>보고기한</th><th>보고기관</th><th>비 고</th></tr> <tr> <td>○ 2019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보고</td><td>2018.3.31한</td><td rowspan="4">시·군(시·도) → 시·도</td><td rowspan="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td></tr> <tr> <td>○ 2019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td><td>2019.1.05한</td></tr> <tr> <td>- 회계연도 정산 보고</td><td>2019.3.05한</td></tr> <tr> <td>○ 2017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완료 · 정산보고</td><td>2018.3.15한</td></tr> <tr> <td>○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보고(연)</td><td>2018.12.31한</td><td>(농식품 부)</td><td>* 서식은 별도 통보</td></tr> </table> 《제 제》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 위반,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다만, 가축분뇨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별표9) 중 별 제3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개별기준 폐항)와 별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개별기준 고항)에는 1회시경고, 2회시 1년간, 3회 이상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2019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2018.3.31한	시·군(시·도) → 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	○ 2019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	2019.1.05한	- 회계연도 정산 보고	2019.3.05한	○ 2017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완료 · 정산보고	2018.3.15한	○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보고(연)	2018.12.31한	(농식품 부)	* 서식은 별도 통보	○ 보고기한 날짜 조정 ○ 예비살포비 지원지침에 따라 경미한 행정조치 사항에 대한 지원 제한 완화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2018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2017.3.31한	시·군(시·도) → 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																																				
○ 2018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	2018.1.05한																																						
- 회계연도 정산 보고	2018.3.05한																																						
○ 2016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완료 · 정산보고	2017.3.15한																																						
○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보고(연)	2017.12.31한	(농식품 부)	* 서식은 별도 통보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2019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2018.3.31한	시·군(시·도) → 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																																				
○ 2019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	2019.1.05한																																						
- 회계연도 정산 보고	2019.3.05한																																						
○ 2017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완료 · 정산보고	2018.3.15한																																						
○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보고(연)	2018.12.31한	(농식품 부)	* 서식은 별도 통보																																				

구분	현행	변경	사유
	○ (이하 생략)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우수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평가 실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 평가대상 : 공동자원화시설 - 평가기간 : 2017년 1월 ~ 12월 - 평가내용 : 가동률 등 계획대비 처리실태, 자원화 시설 운영·관리실태, 퇴·액비 생산·유통관리 등 - 평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회원 등 전문가로 평가 가점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우수 액비유통센터> - 평가대상 : 정부지원 액비유통센터 - 평가기간 : 2017년 1월 ~ 12월 - 평가내용 : 사업장 운영실태, 시비치방서 발급 실적, 액비살포 실적, 시설·장비 등 활용실태, 위탁받은 액비저장조 관리실태, 액비품질관리 실태 등 - 평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회원 등 전문가로 평가 가점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 (현행과 같음)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우수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평가 실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 평가대상 : 공동자원화시설 - 평가기간 : 2018년 1월 ~ 12월 - 평가내용 : 가동률 등 계획대비 처리실태, 자원화 시설 운영·관리실태, 퇴·액비 생산·유통관리 등 - 평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회원 등 전문가로 평가 가점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우수 액비유통센터> - 평가대상 : 정부지원 액비유통센터 - 평가기간 : 2018년 1월 ~ 12월 - 평가내용 : 사업장 운영실태, 시비치방서 발급 실적, 액비살포 실적, 시설·장비 등 활용실태, 위탁받은 액비저장조 관리실태, 액비품질관리 실태 등 - 평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회원 등 전문가로 평가 가점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 평가기간 날짜 조정
《환류》		《환류》	

구분	현행	변경	사유
	○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핵심주체인 자원화조직체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조직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자금 추가 지원 - (현행과 같음) - 우수 액비유통센터 선정 후 인센티브 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유통센터를 등급화* 하여 액비살포비 차등 지원 * 등급화 : A등급 : 25만원/ha, B등급 : 20만원/ha, C등급 : 15만원/ha ** 평가결과 '10년부터 3년 연속 "C등급" 또는 5회 "C등급" 을 받은 액비유통센터는 1년간 액비살포비 등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설> - <신설> - 비료생산업 등록(가축분뇨 발효액)시 인센티브 우선지원(300천원/ha)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핵심주체인 자원화조직체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조직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자금 지원 - (현행과 같음) - 우수 액비유통센터 선정 후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고,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유통센터를 등급화* 하여 액비살포비 차등 지원 * 등급화 : A등급 : 30만원/ha, B등급 : 20만원/ha, C등급 : 10만원/ha ** "C"등급 연속 3회 이상 또는 합계 5회 이상을 받은 경우 차년도 1년간 지원 제외 *** 운영실태 점검 시료채취 등 거부시 당해 사업 및 차년도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C"등급으로 하고, 당해 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비료생산업 등록(가축분뇨 발효액)시 시점은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원(등급별로 50천원/ha)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고품질 액비생산·유통, 악취저감 등에 기여한 자원화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지원 제외 기준 명시 - '17년 액비살포비 지원지침에 예고('18년)
IV. 사업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에서는 2017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18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17.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에서는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19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18.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사업수요조사 날짜 조정

구분	현행	변경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2018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7. 4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201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8. 4월)	○ 사업수요조사 날짜 조정
2. 기타 사항(예고)	2. 기타 사항(예고)	2. 기타 사항(예고)	
○ <신설>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자에 한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자금 지원(2020년부터 적용)	○ 100대 국정과제 수행 및 악취저감, 사양관리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자격 요건 강화 예고	
○ 공동자원화시설(17년) 및 액비유통센터(18년)는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 의무화 *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신규·공사중인 사업자는 준공 및 비료생산업 등록후 사업비 정산, 운영 중인 시설이 비료생산업 미등록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참여 제한	○ (현행과 같음)		
○ <신설>	○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사업신청자는 '18년부터 본인 소유의 사업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19년부터는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여야만 사업신청 가능	○ 공동자원화사업의 집행을 제고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신청 조건 강화 예고	
○ 개별처리시설 대상농가는 '19년부터 축산환경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신청서류에 포함시켜야만 지원가능(18년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및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대상은 '19년부터 축산환경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신청서류에 포함시켜야만 지원가능(18년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및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목적달성을 위해 컨설팅 강화 예고	○ '18년부터 시행
○ '깨끗한 축산농장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경우 2018년부터 우선 지원(신청 및 우대지원 기준 별도 시달)	○ (삭제)	○ '18년부터 시행	
○ 공동자원화사업장을 대상으로 '분뇨 슬러지 제거 지원' 및 '가축분뇨 신속 수거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실시(17년 2개소)	○ (삭제)	○ '18년부터 시행	
○ <신설>	○ 대규모(200톤 이상) 액비저장조사업은 '19년부터 신규지원을 중단하고 기존 시설 개보수 위주로	○ 가축분뇨의 신속수거사업 실시 및 기존 설치된 액비저장조의 활용도	

구분	현행	변경	사유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지(개별처리시설)는 사업완료 후 1년 이내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에서 열거한 환경친화축산농장, HACCP인증농가 등으로 지정 또는 인증을 받도록 지도·권고(2020년부터 의무화 계획) ○ 무허가 개선대책 관련 2018.3.25일 이후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사업지원 제한 ○ <신설>	○ 지원 전환(연구용역을 통해 개보수 지원단가 계산정) ○ 밀폐공간 작업시 질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8년부터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보급 지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정착분뇨처리지원사업은 '19년부터 깨끗한축산농장조성사업으로 지원	○ 제고를 위해 신규지원 중단 예고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보급 지원 예고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통합운영